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4호의7서식] <개정 2020. 5. 27.>

[ ] 수입 / [ ] 제조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신청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30일(연장: 20일)

신청인	상호		사업자등록번호
	대표자 성명		생년월일
	사업장 소재지 (전화번호:)		
신청 대상	① 종류	일반 고형연료제품 [ ] 성형, [ ] 비성형	바이오 고형연료제품 [ ] 성형, [ ] 비성형
		제조국(수입품의 경우)	
		제조업체(수입품의 경우)	
	② 원재료의 종류 및 구성비율		
	③ 보관장소 또는 제조시설		
	④ 보관형태 [ ] 창고보관, [ ] 포장, [ ] 기타 ( )		
	⑤ 품질검사신청물량(수입의 경우)		
	⑥ 품질검사 신청 항목	[ ] 일반 고형연료제품 전 항목, [ ]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전 항목, [ ] 수분 항목	
		기타 항목	

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입 또는 제조하려는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폐자원에너지센터장 귀하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

첨부서류	없음	수수료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8에 따른 금액

작성방법

③란은 고형연료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최종 선적 전 보관장소를 적고,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시설의 주소를 적되, 제조시설에서 검사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관장소를 적습니다.

처리절차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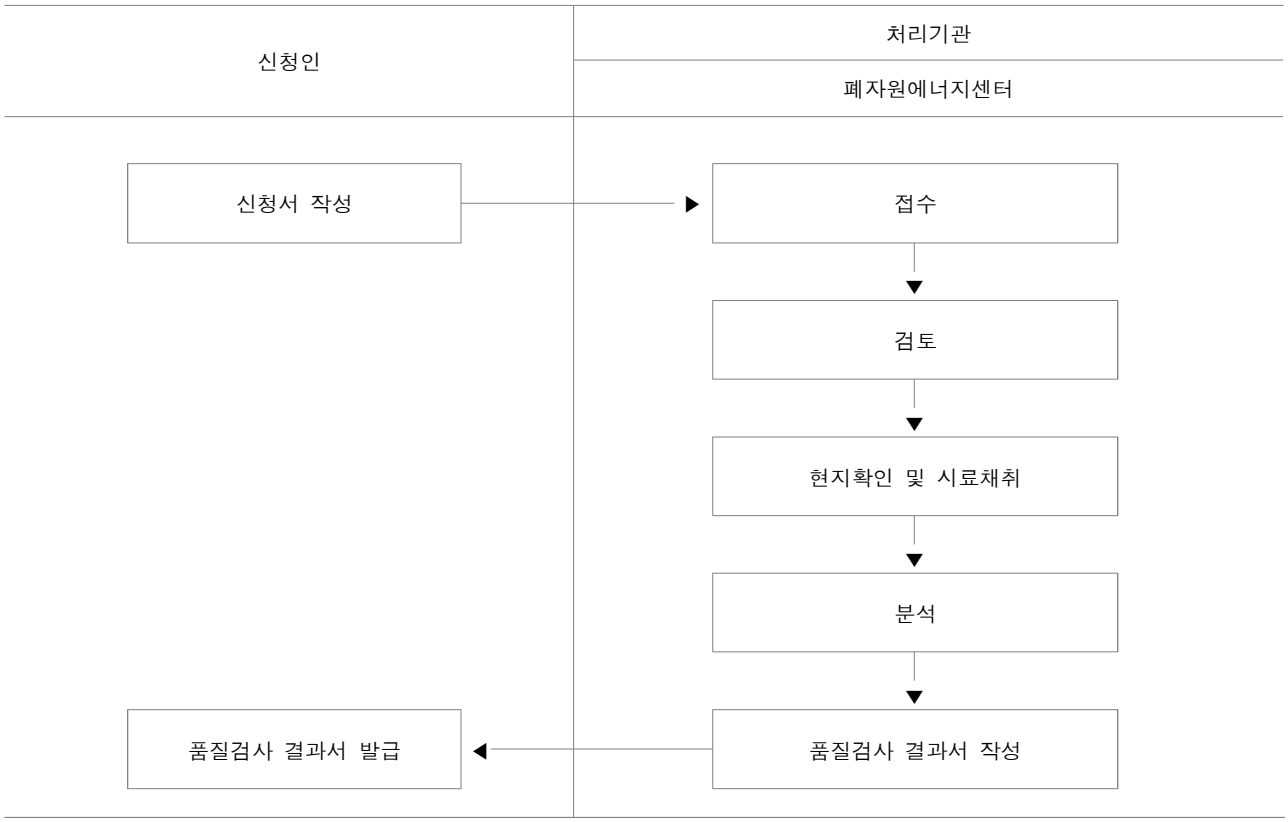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